

\$\$\$\$\$\$\$\$\$\$\$\$\$\$\$\$\$\$\$\$\$\$\$\$\$\$\$\$\$\$\$\$\$\$\$\$\$\$\$\$\$\$\$\$\$\$\$\$\$\$\$\$\$\$\$\$\$\$\$\$\$\$\$\$\$\$\$\$\$\$\$\$\$\$\$\$\$\$\$\$\$\$\$\$\$\$\$\$\$\$\$\$\$\$\$\$\$\$\$\$\$\$\$\$\$\$\$\$\$\$\$\$\$\$\$\$\$\$\$\$

○ 韓國土壤肥料學會 30週年 記念 심포지엄 參席

지난 10월 30일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토양비료학회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이날 심포지엄에는 협회 황선웅 전무이사의 “비료산업의 발전과정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고, 그밖에 3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회원사 임직원을 비롯하여 토양비료학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방안 -

황진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註 : 상공회의소의 산업환경정보에 게재된 자료인용)

■ 기후변화협약상 새로운 의무이행 수단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제17조 배출권거래제, 제6조 공동이행제도, 제12조 청정개발체제 등 3가지 새로운 의무이행 수단을 인정하였다. 감축의무에 반대하던 미국등의 입장이 감축으로선회한 것도 해외투자, 대외거래 등 새로운 의무이행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가 바로 배출권을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인데,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도 배출권 거래에 근본을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제도이지만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SO₂, 납 등에 대한 배출권 거래를 시행해 오고 있어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제도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면 A, B 공장이 각각 1톤의 CO₂를 저감하여야 하는데, A공장은 CO₂ 1톤을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1달러인 반면, B공장은 10달러가 드는 경우 A공장에 2달러를 투자하여 2톤의 CO₂를 감축한 후 목표치를 넘는 1톤을 B공장에 파는 것이다. 이 경우 CO₂ 1톤의 거래가격이 5달러라면, A공장은 4달러, B공장은 5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은 여타 생산성 증진 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 CO₂ 저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두공장간의 거래개념을 한계저감비용이 다른 국가간에 적용한 것이 바로 국가간 배출권거래제도이다.

▣ 청정개발체제의 의의 및 특징

o 의의

CDM은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 중국 등 개도국에 투자하여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로 2000년부터의 투자실적을 2008~2012년의 의무이행 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기시작(Early Credit) 조항도 12조에 삽입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투자 공여국에 커다란 특혜를 주고 있는 제도로 선진국은 보다 많은 배출저감 실적을 얻기 위해 투자 대상국을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다량의 CO₂ 배출권을 선진국에 넘겨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청정개발체제의 특징

청정개발체제는 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제도와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즉 CDM은 선진국(Annex I)과 개도국(Non-Annex I)간의 거래이며, 프로젝트 단위의 거래방식으로 배출권 대신에 공인배출각증(CER)을 거래하는 방식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 청정개발체제와 관리된 청정사학

현재 각국이 내세우는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투자로 인한 감축의 계산근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투자기업이나 국가는 가급적 많은 CER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유치국은 이를 덜 인정하려고 할 것이다.

〈 새로운 의무이해 수단의 차이점 〉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거래방식	국가간 배출권 거래	프로젝트에서 나온 배출감축 단위를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거래	Non-Annex I 국가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공인배출 감축의 취득
단위	할당된 배출량의 일부분	배출감축단위 (Emission Reduction Credit)	공인배출감축 (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참여자	Annex I 국가	Annex I 국가 및 당사국 합의에 의한 적법한 기관	Annex I 국가는 구매자로 Non-Annex I 국가는 판매자로 참여 민간이나 공공기관도 참여 가능
의정서상 명시된 요구사항	배출권의 국가간 거래는 국내의 배출저감 노력에 대한 보조적 성격이 지 주된 이행수단은 아님	ERC는 관련 당사자 간에 승인되어야 하고 협약상의 보고의무를 준수하는 나라에 의해 서만 취득되어야 함 국내조치에 대한 보조적 성격	당사국회의의 '권위와 지시'에 따라 배출감축은 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운영주체에 의해 공인되어야 함. 당사국회의는 공인된 사업과 실의 일부분이 행정비용을 커버해야 하며, 협약이행이나 수용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을 우선 도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함
당사국회의 추가과제	당사국회의는 증빙, 보고, 회계적 측정에 관한 사항 등 적절한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정하여야 함	당사국회의는 증빙과 보고에 대한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더 연구해야 함	당사국회의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와 증명을 통하여 투명성, 효율성, 회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과 절차를 개발하고 2000년부터 시작되는 조기시작 조항의 의미를 확립해야 함.

둘째, 흡수원(Sink)의 포함여부이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조림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개도국의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CO₂ 저감분을 인정받으려 하나 EU는 일단 흡수원을 거래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셋째, 공인배출감축(CER)의 거래한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내의 배출 저감노력이 우선이고 해외에서의 CER 획득은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하나, 미국은 제도전체

\$\$\$\$\$\$\$\$\$\$\$\$\$\$\$\$\$\$\$\$\$\$\$\$\$\$\$\$\$\$\$\$\$\$\$\$\$\$\$\$\$\$\$\$\$\$\$\$\$\$\$\$\$\$\$\$\$\$\$\$\$\$\$\$\$\$\$\$\$\$\$\$\$\$\$\$\$\$\$\$\$\$\$\$\$\$\$\$\$\$\$\$\$\$\$\$\$\$\$\$\$\$\$\$\$\$\$\$\$\$\$\$\$\$\$\$

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한도설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CDM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과실을 넘겨주는 문제, 편익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 산업계의 대응방안

CDM은 개별기업간의 거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다. 물론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건설업계 및 해외에 투자하거나 국내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CDM과 대부분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대외거래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의 자체적인 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위치인 우리나라는 해외투자도 많고 투자유치도 많을 것이므로 CDM에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21세기 경제성장의 관건인 CO₂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긍 희망은 젊은 경찰보라도 감싸로울 것 이다.

< 장 카를 리히터 >